

고 단체에만 적용시켰으며,
일부 자구를 수정함.

나. 주요골자 :

- 센터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“자원 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6조제2항)
-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“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방안 등”으로 구체화함.(안 제6조제4항)
- 등록 후 1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자원봉사단체로 한정(안 제7조제1호)
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
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“제24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.
- 제2조제2항중 “정기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- 제9조 중 “공무원복무규정 제9조”를 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
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2조”를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5조”로 한다.
- 제2조 본문 중 “7,369명”을 “7,27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호 중 “7,351명”을 “7,26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
한다.

제2조(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
행으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
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
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
본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”를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9조”로 한다.
- 제5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, 제11호를 제12호로, 제12호 내지 제30호를 제14호 내지 제32호로 하고, 동조에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 제12호(중전의 제11호) 중 “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”을 “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”로 한다.
- 7. 소속 공무원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
- 13. 초·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·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 명령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별표1중 초등학교(북부)의 서울오봉초등학교
란 다음에 서울창림초등학교란을, 초등학교(강
서)의 서울염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
등학교란을, 초등학교(성북)의 서울오현초등학
교란 다음에 서울 일신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
과 같이 신설한다.

초등학교(북부)

번 호	명 칭	위 치
56	서울창림초등학교	서울시 도봉구 창2동 412-4